사 규 번 호	
관 리 부 서	
등 급	일 반

이사회 규정

Samyang Foods

이사회 규정

2021.03.26 제정

2022.03.08 개정

2024.03.28 개정

2025.05.12 개정

2026.03.26 개정

제 1장 총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권한)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제 2 장 구성

제 4 조(구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 5 조(의장)

①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② 이사회 의장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대표이사 유고시 직무대행 순서를 준용하여, 이사회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또한 필요시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의 임시의장을 선임할 수 있다.

제 3 장 회의

제 6 조(종류)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에 개최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 7 조(소집)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의장의 유고시에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각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의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의 의사를 진행하고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며 특정한 이사를 지정하여 의사의 진행을 위임할 수 있다.

제 8 조(소집절차)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전자우편, 문서, 구두 등의 방법 중 1개 이상의 방법을 통해 통지하여야 하고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 9 조(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 및 정관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및 제415조의2 3항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부의사항)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1)-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허용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제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자본의 감소

(6) 회사의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해산, 합병, 분할·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등

(7)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8)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9)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단, 상법 제548조의8 제5항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려는 때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10)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1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12) 현금. 주식. 현물배당 결정

(1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취소

(14) 이사의 보수

(15)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16) 법정준비금의 감액

(17)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2) 공동대표 및 각자대표의 결정

(3)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4)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5)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6)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7)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준법통제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 등

(8) 기본조직의 제정 및 개폐

(9)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10)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 해외 현지법인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11) 간이주식교환,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주식교환,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 등의 결정

(12)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3. 재무에 관한 사항

(1) 출자 및 투자에 관한 사항

가. 건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상의 출자 타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취득을 말함. 이하 같음) 또는 출자지분 처분

나. 건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신규시설 투자, 시설증설, 별도 공장의 신설 및 차입계약 체결

다. 사업계획 심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출자 및 투자 등 이사회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

라. 자산총액 100분의 2.5 이상의 자산취득 및 처분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가. 회사의 경영, 재산 등에 중요한 신물질 또는 신기술에 관한 특허권의 취득, 양수 또는 양도

나. 회사의 경영, 재산 등에 중요한 자본도입, 기술도입, 기술이전 또는 기술제휴에 관한 계약의 체결, 중도해지 또는 연장

다. 기타 이사회가 정하는 회사의 경영, 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의 체결, 중도해지 또는 연장

(3) 결손의 처분

(4)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5) 신주의 발행

(6) 중간배당

(7)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 대한 사채발행의 위임

(8) 준비금의 자본전입

(9) 전환사채의 발행

(1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1) 대규모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12)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13)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신탁계약 등의 체결 또는 해지 포함.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와 신탁계약 등의 계약기간이 종료한 경우는 제외)

(14) 자기주식의 소각

4. 보고사항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4)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5. 기 타

(1)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이사등과 회사간의 거래)에 대한 승인

(2) 타회사의 임원 겸임 또는 경업

(3)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에 부의되는 사항이 아닌 여타 사항에 관하여는 대표이사가 이를 결정·집행한다.

③ 이사회는 법령 및 정관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른 이사회 부의사항 중 일부를 제11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이사회 내 위원회)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법령, 정관에서 정한 사항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③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권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령, 정관 및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⑤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보고받은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다시 결의할 수 있다. 다만 감사위원회가 결의한 안건은 다시 결의할 수 없다.

제12조(관계인의 출석)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12조의2(외부 자문 등)

이사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법률고문 등 외부 전문가의 지원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③ 의사록은 본점에 비치한다.

제15조(간사)

① 이사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각 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 소집통지, 부의안건의 정리 및 배포, 의사록 보존을 포함하여 이사회 사무 전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제16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3월 26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2. (개정)

이 규정은 2022년 03월 0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개정)

이 규정은 2024년 03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개정)

이 규정은 2025년 05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개정)

이 규정은 2026년 03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